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Sor.1/2563 호

투자촉진을 받는 활동범주 항목 수정 관련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2/2557 호를 따름

2014 년 12 월 3 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종합 안내사항 제 2/2557 호 투자촉진 정책과 규정에 따라

불교년 2520 년 투자촉진법 제 16 항, 18 항, 31 항에 따라 투자촉진위원회는 투자촉진을 받는 활동범주에 해당되는 사업의 수정을 알리며 2014 년 12 월 3 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2/2557 호 에 해당되는 활동범주 5.9 디지털서비스(Digital Services)사업과 활동범주 7.9.2.2 디지털산업단지(Digital Park)사업 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대체함을 알림

활동범주	조건	권리와 혜택
5.9 디지털 서비스 산업 (Digital services) -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 (Software Platform) - 디지털 분야 관리 서비스 (Managed Service) - 디지털 분야 건축 서비스 (Digital Architecture Design Service) - 각종 디지털 분야 서비스로 FinTech, DigiTech, MedTech, AgriTech 등이 해당	1. 디지털분야의 인력고용(Digital Specialist)과 투자(토지와 순환자본 제외)가 100 만바트 이상이어야함 2. 위원회가 동의한 디지털 분야의 종합서비스가 있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3. 1000 만바트 이상 투자한 프로젝트(토지와 순환자본 제외)의 경우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위해 ISO 20000 기준 증명서 또는 디지털부처에서 동의한 다른 기준에 대한 증명을 받아야 하며 프로젝트 시행일을 기준으로 2 년 이내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실행하지 못할경우 1 년의 법인세 면제 권리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잃게됨 4. 디지털을 이용한 분야중 투자촉진 지원을 받아 판매해 거둔 소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둔 소득도 투자촉진을 위해 받은 금액으로 동일하게 간주	A3

활동범주	조건	권리와 혜택
7.9.2.2 디지털산업단지(Digital Park)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000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가 있어야 함</li> <li>2. 위원회가 동의한 디지털 분야의 종합서비스가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사항이 필요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진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산업단지의 광대역 전체에서 고속 광섬유 통신망 보유 필요</li> <li>-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 위치한 지역센터와 연결할수있는 초고속 통신망 필요</li> <li>- 각 지역을 연결할수있는 전자전기 시스템 필요</li> </ul> </li> <li>2.2 상업적인 연구와 개발 지원을 통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 이에 연관된 인프라가 필요하며, 연구와 개발을 위한 연구실, 생산실험을 위한 공간, 시장연구를 위한 공간(Living Lab), 민간부문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혁신 연구센터 임대등이 필요</li> <li>2.3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들이 사용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세미나실등이 이에 해당</li> </ol> </li> </ol>	A1

2019 년 12 월 18 일부로 시행

2020 년 1 월 15 일에 고시

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촉진위원회장